

『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, 어디서,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,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평생교육영역을 명문화함(안 제3조)
-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등에 경비보조(안 제4조)
- 평생교육단체·시설의 요청에 의한 지도 및 지원 규정(안 제5조)
-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 기능(안 제7조)
 -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·조정
 -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
-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추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 - 15인 이내, 부시장, 교육관계공무원, 시의원, 평생학습관련기관 대표자, 전문가 등으로 구성
-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(안 제10조)
- 평생교육원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- 평생교육원 위치 : 구미시 관할구역 내에 둠(안 제13조)

- 평생교육원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관계기관 참석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명시(안 제16조)
- 위원 및 관계기관 참석자 수당 등의 지급(안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5항
- 교육기본법 제10조
- 평생교육법제9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, 어디서,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,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
- 주요 제정내용은
 - 평생교육의 영역은 성인 기초교육 및 지역 사회교육 등을 포함하고
 - 평생교육인적 자원개발추진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2년 임기로,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평생교육 관련 사항을 협의·조정토록 하였음
 - 시민에게 통합적,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“평생교육원”을 설치·운영토록하고 이와 관련된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임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

안 제8조 중 협의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면서 당연직 및 의회의원을 제외한 제6호 내지 제8호의 위원 구성을 「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」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음

- 협의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의 구성을 학계, 교육위원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